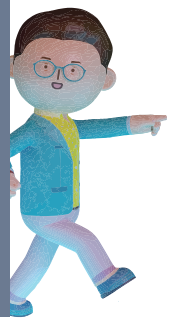




최근 5년간 3회이상 최빈출된 기출 600제를 완벽 정제



2024 김중규 최빈출 600^제 선행정학



2024 김중규 최빈출 600제 [기다나] 선행정학을 출간하며

I N T R O D U C T I O N

저희가 이 책을 새로 선보이게 된 것은 “기출에도 회독이 있다”는 컨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학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이론공부를 마치고 연말에 기출문풀에 돌입하지만 기출문항수도 많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나 일회성 문제들이 섞여 있어, 정답을 고르거나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기출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초시생들이 이론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대표적인 최빈출 문제를 통해 미리 핵심기출을 부담 없이 위밍업하거나 이론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출입문서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출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시즌 막바지에는 중요한 빈출문제들만 정제·엄선된 이 책이 최종 마무리 기출회독용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표성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될 경우에는 이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인사혁신처 기준 최근 5년간 최소 3회 이상 출제된 빈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여 총 600여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항별로 중요도와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출제횟수(변형된 문제 포함)를 표기하여 수험생 스스로 집중력의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문항별로 출제포인트를 통해 출제의도와 출제추이를 분석, 제시하고 답을 쉽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접근경로와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기출문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마다 저자의 생각과 합격생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중규샘팁과 합격생팁을 제시하여 문제를 푸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항마다 자세한 지문별 해설을 달고 지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오답피하기 해설을 빠짐없이 넣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해설에서 특히 중요한 키워드들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빠르게 오답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요약정리나 정리표로 제시하여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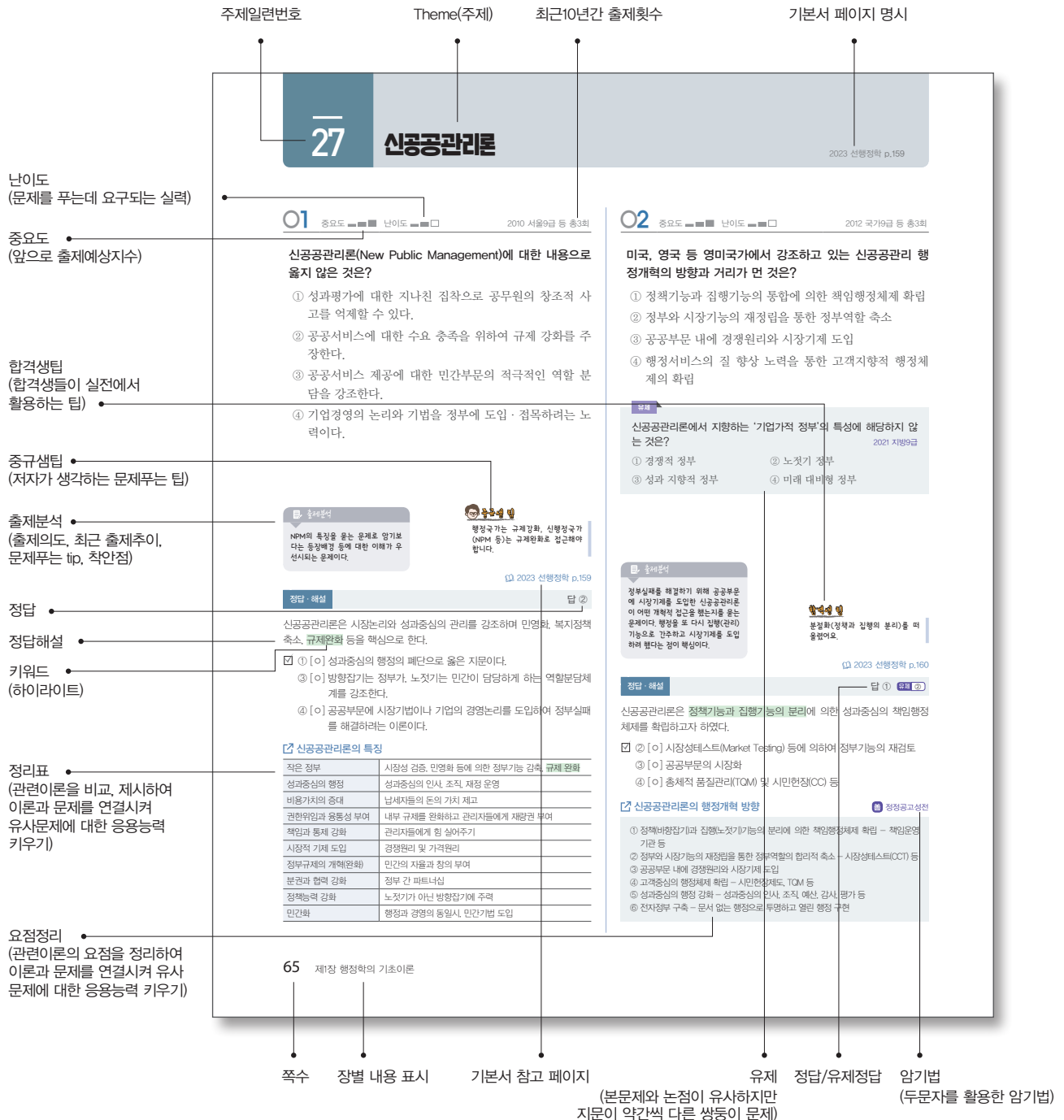
일곱째,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공무원노조법」, 「정부조직법」 등 최근 개정법령은 물론, 필수과목 전환 이후 새롭게 나타난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정책이슈 등까지 모두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기출위밍업이나 최종회독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여러분들의 기출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3. 5. 2. 카스파 연구실에서

김중규

S T R U C T U R E



01

중요도 ■■■ 난이도 ■■■□

2020 경찰간부 등 총3회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이원론, 형평성 강조
-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이원론, 성과 강조

2023 선행정학 p.7

정답 · 해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Osborne) 등이 주장하였으며 행정의 탈정치화를 주장한 정치행정사이원론으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였다.

- ☑ ① [×] 행정행태론 - Simon, 정치행정사이원론. **합리성** 강조, F.Marini는 행태론이 아닌 신행정론을 제창한 학자이다.
- ② [×] 행정관리론 - Wilson & Urwick, 정치행정이원론, **능률성** 강조. Urwick은 Gulick, Wilson 등과 함께 행정관리설 등 고전기 행정학을 이끌었던 학자이다.
- ③ [×] 비교행정론 - Riggs, 정치행정이원론, **합법성**은 19C 법치국가에서 강조

행정개념의 변천

학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정책기능설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행정 본질	관리·집행	정책결정+집행	집행(사실)	목표+정책+집행	정책형성+집행	신관리	협치
학파	기술적 행정학	기능적 행정학	행정 행태설	발전 행정론	신행정론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시기	1880년대	1930~40	194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정치·행정	이원론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일원론	새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일원론
행정·경영	공·사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원론	새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이원론	행정의 시장화	행정의 정치화
이념	능률성, 절약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정의	생산성 (효율성)	신뢰성, 대응성
학자	W.Wilson	Appleby	H.A.Simon	Esman	D.Easton	Osborne	Peters

02

중요도 ■■■ 난이도 ■■■□

2015 국가7급 등 총5회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③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제분석

사바스(Savas)가 제시한 재화 및 공공서비스의 4가지 유형별 특성을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묻는 기본적인 문제로 입문단계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이다.

합력해설

요금재는 돈을 내는 거니까 ①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2023 선행정학 p.10

정답 · 해설

답 ①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

- ☑ ② [○] 집합재는 공공재로써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띠지 않으므로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
- ③ [○] 시장재는 사적재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는 재화이다.
- ④ [○] 공유재는 배제성은 띠지 않지만 경합성을 띠므로 과잉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유재의 비극

재화의 구분(E.Savas)

	비경합성 (비분할성)	경합성 (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 (집합재)	공유재 (공동재)
배제성	요금재 (유료재)	민간재 (사적재)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직접성 ② 강제성
③ 효과성 ④ 가시성
⑤ 자동성

📖 2023 선행정학 p.189

정답 · 해설

답 ③

Salamon은 1980년대 이후 정부정책이 직접적인 정책에서 간접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것에 주목하여 정책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성, 간접성, 자동성, 가시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직접성과 간접성 기준을 사용하였고 자동성과 가시성을 부수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자동성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가시성이란 예산과정 등이 가시적인지 여부이다. ③의 **효과성은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과성은 정책수단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등과 함께 정책수단의 **선택 기준(평가기준)**에 해당한다.

☞ 정책수단의 분류기준과 선택기준(Salamon)

善 강직-효형

분류기준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
선택(평가)기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정당성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영향 (Salamon)

수단		영향				
직접성	종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성	정당성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 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소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영향 (Salamon)

수단		영향				
강제성	종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성	정당성
낮음	손해책임법, 정보 제공, 조세지출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중간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공기업, 대출보증, 직접대출, 계약, 벌금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높음	높음/낮음	높음	낮음	높음/낮음

04 중요도 난이도

2022 지방·서울9급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② 바우처
③ 조세지출
④ 직접대출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을 묻는 문제가 직접성 기준에 이어 강제성 기준까지로 확대되고 있으니 좀 더 체계적인 대비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3 선행정학 p.189

정답 · 해설

답 ①

살라몬의 정책수단유형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이 문제는 직접성과 강제성을 구분해야되는 문제이다.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적인 집행주체가 되는지의 여부이고, 강제성은 강제력이 수반되는지의 여부이다.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과 강제성이 모두 높지만 직접대출의 경우 직접성은 높으나 강제성은 높지 않은(중간정도) 정책수단이다. 인허가 등 경제적 규제가 직접대출 등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강제성이 더 높은 수단이라는 점은 굳이 정책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 ② [X] 바우처는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③ [X] 조세지출은 강제성이 낮은 정책수단이다.

④ [X] 직접대출은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01

중요도 ■■■ 난이도 ■■■

2017 하반기 지방9급 등 총3회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 ②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 ③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출제분석

고전적 조직원리의 개념과 유형을 묻는 문제로 가끔 출제된다.

공무원연

분업을 위한 원리와 조정을 위한 원리들을 구분·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3 선행정학 p.360

정답·해설

답 ①

굴릭(Gulick)이 주장한 부성화의 원리는 부처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할 것인지에 관한 수평적 분화의 기준으로 **분업을 위한 원리**이다. 부성화의 기준으로는 목적, 절차, 고객, 지역별 기준을 들었으며 수직적 계층화나 조정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조직의 원리

계전명통조

- ①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간에 등급화
- ② 전문화의 원리 - 직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담당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는 원리 (명령계통 일원화)
- ④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
- ⑤ 조정의 원리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

조직원리의 유형 구분

분업(분화)을 위한 원리	조정(통합)을 위한 원리
① 분업(전문화)의 원리	① 조정의 원리
② 부성화의 원리	② 계층제의 원리
③ 기능명시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참모조직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 계선과 참모는 구별되어야 함	⑤ 일차성의 원리
	⑥ 예외성의 원리
	⑦ 목표중시의 원리
	⑧ 집권화의 원리

02

중요도 ■■■ 난이도 ■■■

2013 국가7급 등 총4회

다음 중 수직적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 ② 계층직위의 추가
- ③ 임시작업단(task force)
- ④ 규칙과 계획

2023 선행정학 p.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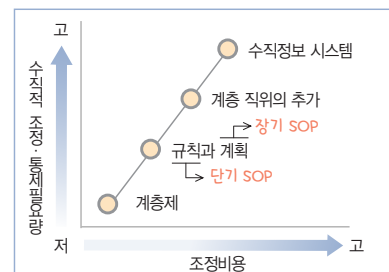
정답·해설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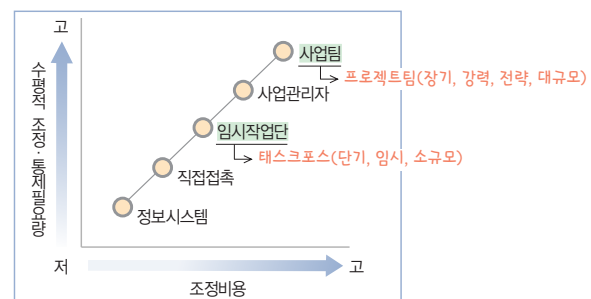
임시작업단 및 프로젝트팀 등은 수직적 조정기제가 아니라 **수평적 조정기제**에 해당한다.

☑ ①②④ [○] 모두 수직적 연결조정기제에 해당한다.

수직적(종적) 연결조정기제



수평적(횡적) 연결조정기제



01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가9급 등 3회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2023 선행정학 p.402

정답·해설

답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고 구성원 또한 공무원 신분도 아니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원칙(「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②③ [○] 모두 공기업의 발달요인으로 맞는 설명이다.

☞ 공기업의 발달요인

- ① 민간자본의 부족
② 국방·전략상 고려
③ 독점적 서비스
④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요청

☞ 공기업의 유형(이론상 구분)

구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
독립성	없음(법인격·당사자능력)	있음(법인격·당사자능력)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상법·특별법	특별법
출자재원	정부예산(전액)	5할 이상 정부출자(주식)	전액 정부 출자
이념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직원신분	공무원	임원 : 준공무원, 직원 : 회사원	
예산회계	국가예산,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국가예산 아님, 독립채산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예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 + 책임운영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철도공사 등
예산성립	국회의결 요	국회의결 불요(이사회 의결)	
특징	저요금정책, 관료주의적	대륙·개도국형	영미형(이상형)
조직특징	독임형(이사회 없음)	합의제(의결)과 독임형(집행)이 분리된 이중기관	

02

중요도 ▬▬▬ 난이도 ▬▬▬

2017 복지9급 등 총5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공공기관

출제분석

최근 공기업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빈출되고 있다.

2023 선행정학 p.403

정답·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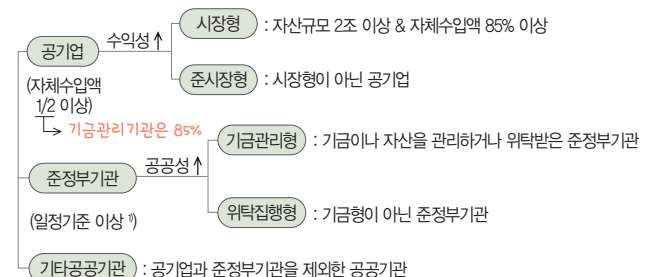
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 ①②④ [○] 모두 공공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유형

공준기-시준-기위



1) 2023.1.1. 부터는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정된다.

정수자-323

→ 300억 → 200억 → 30억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고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2023 선행정학 p.545

정답·해설

답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 ② [○] 현행 법률에는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7.6. 시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확대

- ① 직급 제한(6급 이하) 폐지
- ② 소방과 교육공무원(교원 제외)을 가입대상에 포함
- ③ 퇴직공무원(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가입 허용

내용	종전	개정
가입 대상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 상당의 외무공무원(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③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① 일반직공무원(전직급) ②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교원 제외) ③ 별정직공무원 ④ 위 ① ~ ③에 해당하는 퇴직자 중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
제외 대상	① 지휘·감독·총괄 공무원 ② 인사·보수 담당, 노동관계 조정·감독 공무원 ③ 교정·수사 등 공공안녕·국가안보 담당 공무원	

☑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의 특징

교섭주체	노조 대표자는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제외대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노동 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단체협약의 효력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2022.10.27. 시행)

법적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 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복수설립 X) ②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치는 가능(2022.10.27. 시행)
가입범위 ¹⁾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10년 경력 미만의 외무직, 경감 이하 경찰,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 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우정 등 현업직공무원 ²⁾ 이나, 지휘·감독직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국정원 등)·보안·경비업무 종사자, 군인, 교정직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기능	①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③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사항 ④ 기타 당해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1) 가입범위에 있어서 일반직, 별정직, 소방·경찰공무원의 직급제한과 외무직의 경력제한 등은 2022.10.27.부터 폐지되었다.
2) 2022.10.27.부터는 현업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게 되었다.

☞ 공무원노조(2021.7.6. 시행)와 공무원직장협의회(2022.10.27. 시행)의 가입기준 비교

직종	공무원 노조	공무원 직장협의회
일반직	전직급	6급 이하 ¹⁾
별정직	전직급 상당	6급 이하 상당 ¹⁾
특정직	외무 O (전직급)	O (10년 경력 미만) ¹⁾
	경찰 X	O (경감 이하) ¹⁾
	소방 O (전계급)	O (소방경 이하) ¹⁾
	교육 O (교원 제외)	X
퇴직자	O	X

1) 2022.10.27.부터는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가능 직급범위 및 경력제한도 모두 폐지되었음.

01

중요도 ■■■ 난이도 ■■■

2013 경정승진 등 총8회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2023 선행정학 p.602

정답 · 해설

답 ①

추경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되는 예산으로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며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 ② [○]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본래 예산 즉, 당초예산을 의미한다.
- ③ [○]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 ④ [○]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

본예산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최초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당초예산
수정예산	국회제출 후 성립(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립(확정)된 후에 추가·변경된 예산 ¹⁾
준예산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집행과 결산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운용

☑ 추경예산 편성사유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포함)가 발생한 경우
- ② 경기 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02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국가9급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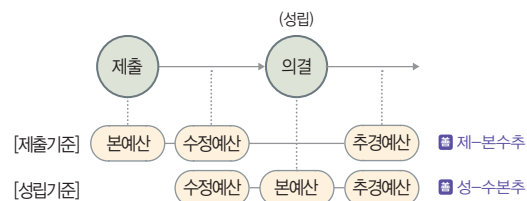
2023 선행정학 p.602

정답 · 해설

답 ③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문의 표현과 수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이 성립(의결)되기 전에 편성·제출된다는 점을 착안하여야 할 문제이다. 가장 먼저 제출되는 예산은 본예산이지만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에 앞서 편성·제출되는 예산을 의미하므로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의 순서가 된다.

☑ 예산의 제출 · 성립시기별 유형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없음 (자치단체 개별조례)
성격	법정기구(지방분권법)	임의기구
위촉권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대표성	높음	낮음
기능	주민의견 수렴, 자치계획 수립 등 실질적 주민대표기구(협의·실행기구)	자치사무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
설치단위	읍·면·동단위	읍·면·동단위
자치단체와의 관계	대등한 협력관계	자문관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③ 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2022.1.13.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최근 빈출되기 시작하고 있으니 정리를 잘 해두세요.

☞ 2023 선행정학 p.840

정답 · 해설

답 ③

2022.1.13 전면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참여”를 신설하였으나, “주민의 의무(제27조)”는 개정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 “주민소환(제25조)” 역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못하고 2022.10.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 ☑ ①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특례(제4조)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취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②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41조)를 신설하였으며, 2022년 현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임명할 수 있지만,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 ④ [○] 과거에는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임의기구로 존재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규정(제105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20명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15명 이내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들로 구성되며, 단체장의 임기 시작 20일 범위까지 존속하며 단체장의 인수인계업무를 담당한다.

☞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2022.1.13. 시행)

내용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자율화	일률적인 기관대립형 ⇨ 기관구성형태(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를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청구연령 19세 ⇨ 18세 이상 주민
	연대서명 인원 축소 다음 인원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500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 ⇨ 150명
	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3년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화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접 처리 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안 발의요건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지방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를 둠(의장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초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무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인구100만)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 특례는 법률로 정함 ⇨ 지방분권법(부시장 2인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설치규정 마련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②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규정 마련	① 위원장 1인 포함, 시·도는 20인, 시·군·구는 15인 이내 ② 당선일부터 임기 개시후 20일까지 활동 가능

주민참여제도 개편(종합)

		현행	개편	시행일
주민 조례 청구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2022.1.13.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 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 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처리방법	서면서명	서면서명 + 전자서명 ²⁾	
주민 감사 청구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2022.4.27.
	서 명 인 원	광역	300명	
		50만	200명	
		기초	150명	
	청구시효	2년	3년	
주민 소송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주민 투표	투표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2022.4.27.
	청구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 정사항 모두 ¹⁾	
	청구방법	서면서명	서면서명 + 전자서명 ²⁾	
	투표일	발의일부터 23~30일 이내 에서 단체장이 관할 선관 위와 협의·결정	발의일부터 23일이후 첫 번째 주요일	
	투표방식	현장투표	현장투표 + 전자투표 ³⁾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4 이상 투표, 과반 찬성	
주민 소환	개표요건	1/3 이상 미투표시 개표 않음(부결)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 표	국회 계류중
	투표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확정요건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4 이상 투표, 과반 찬성	

1) 2022.10.27. 시행
2) 2023.4.27. 시행
3) 전자투표는 청구인 대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단체장 직권으로 실시 가능(2022.10.27. 시행)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 ① 주민소환
- ② 주민의 감사청구
-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

2023 선행정학 p.834

정답 · 해설 답 ④

종래에는 주민조례개폐청구만 인정되고 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에 의하여 주민들이 자치단체 장에게 규칙 개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규칙개폐의견 제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 ①②③ [×] 기존의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었던 제도들이다.

주민규칙개폐 의견제출제도 (2022.1.13. 시행)

- ① 주민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③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2022.1.13. 시행)

내용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화	기관대립형만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 사무예시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에서 삭제
주민조례청구제도 개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주민조례발안법)로 정함 [주민조례발안법] ① 청구연령 : 19세 ⇒ 18세 ② 청구대상 : 단체장에게 ⇒ 지방의회에 ③ 처리시한 : 단체장이 60일 이내 지방의회에 부의 ⇒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의결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규칙 제정 자율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 제정 가능(조례의 위임 불필요)
자치단체장 직 인수위	설치.운영근거 마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청구연령 19세 ⇒ 18세 이상 주민
	연대서명 인원 축소 다음 인원 이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① 시·도 : 500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 ⇒ 150명
	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3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자치단체장이 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음
지방의회 의안발의의 자율화	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 ⇒ 단체장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이상 지방의원의 찬성
폐지분합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권자 규정	자치단체 폐지분합시 최초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장 : 대통령)를 둠
기초단체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게 함
특례시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법률로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함 ⇒ 시장 2인을 둠(자치분권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마련	특별자치단체의 성격과 설치절차, 규약 등 구체적 규정 신설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 ②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나 해산 등을 권고할 수 있음

05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군무원9급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2023 선행정학 p.833

정답·해설

답 ③

과거에는 조례개폐를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재는「지방자치법」전면 개정과 「주민조례발안법」제정(2022. 1. 13. 시행)으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정되었다.

- ☑ ① [○]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 또는 게을리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 ② [○]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 ③ [×]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를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 2011년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주민조례청구제도 개편(2022.1.13. 시행)

	종전	개편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의결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판 2023년 5월 8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26-1

값 25,000원

